

의안 번호	520
----------	-----

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

검토보고서

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
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
검 토 보 고 서

2025. 10. 21.

전문위원 신정경

1. 제안경위

- 가. 제출자 : 소형준의원외 5명
- 나. 의안번호 : 제520호
- 다. 제출일자 : 2025.9.25.
- 라. 회부일자 : 2025.10.14.

2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「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」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았을 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제한 사항을 개정하고 각 호를 신설 함(안 제7조제2항)
- 나. 경고 또는 사과 징계에 대한 지급제한 사항을 신설 함(안 제7조제3항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- 다. 사전협의 : 의회사무국
- 라. 입법예고: 2025. 9. 30. ~ 2025. 10. 4.(의견없음)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

조문	현 행	개 정 안	주요 개정 사유
제7조제2항	(출석정지 징계시 지급 제한 규정 존재)	(본문)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 (각호 및 단서)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. (총 3호 신설: 회의 질서 문란 행위, 의장/위원장석 점거, 출입 방해 등)	회의 방해 및 질서문란에 대한 징계시 강화된 지급 제한 근거 마련
제7조제3항 (신설)		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,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.	국민권익위 권고 반영. 경징계(경고/사과)에 대해서도 의정비 50% 감액 및 환수 근거 신설.
제7조제4항 (개정)	(종전 제3항)	제1항의 공소가 무죄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한다.	신설된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시 소급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개정 조항의 정합성 확보.

-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조례로 의정비 지급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 내에 있으며,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제도적 타당성이 매우 높음

- 현행 징계 유형 중 가장 낮은 단계인 '경고'나 '사과'를 받은 의원에 대해 실질적인 재정적 불이익(50% 감액 및 환수)을 부과함으로써, 의원들의 회의 질서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
- 징계로 인한 의정 활동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비를 전액 지급하는 예산 낭비 요소를 해소하고, 구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의정비의 목적 적합성을 높임
- 징계 의결 이후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한 환수 조항([제7조제3항] 감액분을 환수한다)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엄정성을 기할 수 있음

나. 종합 결론

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의회의 자정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반영하는 것으로, 제도적 타당성, 적법성 및 필요성이 매우 높음.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·의결하여 성북구 의정비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

- 붙임 1.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제안내용 1부
2.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요약

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제안

□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권

- 국민권익위원회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.

□ 2022년 권고사항의 내용 [지방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]

-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2월 19일 「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」을 의결하여 제도 개선안을 권고함.
-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의 갑질·성 비위, 겸직·영리행위 금지 위반 등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한 제재기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함.
- 실태조사 결과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더라도 의정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었고, 이에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권고함.
- 권고 내용에는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의 전반 감액, 질서유지 의무 위반 시 3개월간 미지급, 경고·사과 징계시 2개월간 절반 감액 등이 포함됨.

2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(지방의회)

□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

- 본회의·위원회에 일정 기간 참석할 수 없는 출석정지를 포함하여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·사과의 경우도 의정비 감액

구분	의정비 지급 제한(예시)
출석정지	<p>▶ 일반적인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1/2 감액(⇒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)</p> <p>▶ 질서유지 의무 위반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(⇒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)</p>
공개회의 경고·사과	<p>▶ 질서유지 의무 위반 징계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비 1/2 감액 (⇒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)</p>

국민권익위원회

의결

의안번호 제2022 - 859호

의안명 「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」

대상기관 행정안전부, 243개 지방의회

의결일 2022. 12. 19.

주문

「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」을 별지와 같이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, 243개 지방의회의 장에게 권고한다.

〈국민권익위 보도자료 요약 (2022. 12. 22.(목) 11:00)〉

- 국민권익위가 최근 8년간 제7기와 제8기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, 제7기에서 60명, 제8기에서는 2배 이상 증가한 131명의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.
 - 징계사유를 보면, △ 갑질 행위·성추행 등 성 비위(28명, 14.7%) △ 본인 사업체와 수의계약 등 영리 행위(20명, 10.5%) △ 음주·무면허 운전(16명, 8.4%) 등의 비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.
 - 징계유형으로는 △ 출석정지 97명(50.8%) △ 공개회의 경고 39명(20.4%) △ 공개회의 사과 31명(16.2%) △ 제명 24명(12.6%)으로 나타났다.
-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,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데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받고 있었다. 실제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총 2억 7,230만 원(1명당 평균 280만 원)의 의정비가 지급됐다.
-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도 의정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었다.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최근 8년간 총 6억 5,228만 원(1명당 평균 1,716만 원)의 의정비가 지급됐다.
-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.